

2001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
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

◆ 사업장 현황신고란?
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(매출액)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

◆ 사업장현황 신고내용

- 사업자 인적사항, 사업장면적 및 고용인원, 시설 등 기본사항
- 지난 해 1년간 수입금액, 지출경비, 계산서 수수금액,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등 1. 1~12. 31까지의 주요 사업실적

◆ 사업장현황 신고요령

- 사업장현황신고는 2002.1. 1~1. 31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
-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되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
- 병의원 : 엑시머레이저(안과), 임플란트엔진(치과), 스킨마스터(피부과) 등 주요 의료기기 보유내역, 마취제 취급량, 의약품등 재료매입액,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
- 한의원 : 감초, 녹용,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, 보약제조 등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

- 사업장현황 신고서 1년 동안 주고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·매입처별합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납세지원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됨
- 납세자편의를 위하여 우편신고대상자는 신고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함께 제공하고 납세자는 작성된 신고서식을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
- 사업장현황신고서, 수입금액검토표 등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,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관한의문사항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립니다

◆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

-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신고
-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

◆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

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병과(성형외과·안과·치과 등)에 대해서는 이번 신고사항과 5월 소득세 신고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임

2002년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

◆ 기준경비율제도란?

-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(매출금액)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.
그러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(매입비용, 임차료, 인건비)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,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$$\begin{aligned} \text{소득금액} &= \text{수입금액} - \text{주요경비(매입비용} \\ &\quad \text{+ 임차료 + 인건비)} \\ &\quad - (\text{수입금액} \times \text{기준경비율}) \end{aligned}$$

-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.

$$\text{소득금액} = \text{수입금액} - (\text{수입금액} \times \text{단순경비율})$$

◆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?

-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며,
-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

◆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?

- 주요경비의 범위
- 증빙서류의 종류
-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
-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를 제출하여야 함(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

연도별 업종구분	2002년~ 2003년 귀속	2004년~ 2005년 귀속	2006년 귀속
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도·소매 업,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업	1억5,000만원	9,000만원	7,200만원
제조업, 숙박·음 식점업, 전기·가 스 및 수도사업, 건설업, 운수·창 고업, 통신업, 금 융·보험업	9,000만원	6,000만원	4,800만원
부동산임대업, 사 업서비스업·교 육서비스업·보 건 서비스 및 사 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	6,000만원	4,800만원	3,600만원

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
면 됨)
-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·지급조서 또
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
야 합니다

◆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시기?

-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(기준경비율적
용대상자)에 대하여는 모두 장부를 기
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

매입비용	· 재화(사업용고정자산 제외)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· 재화의 매입은 상품·제품·재료· 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·열 등 관 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· 운송업의 운송비는 운송업과 운송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 로 지출하는 금액 · 음식료, 보험료, 수리비 등 용역(서비 스)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
임차료	·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, 기계 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
인건비	· 종업원의 급여·임금 및 일용근로 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으로 함

폐지하고 2002. 1. 1 이후 발생하는
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합
니다.

- 즉 2002년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
업자는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
귀속 소득세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
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
야 합니다.
※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
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
있습니다.

◆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

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
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
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
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
(10%, 복식부기의무지는 20%)가 부과되
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2002년부터는
장부를 기장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

- ※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
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
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
빠짐없이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
있습니다.

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 비교

구 분	기장신고에 의한 신고	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
신고방법	기장 신고	추계 신고
소득금액 계 산	수입금액에 기장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	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주요경비(매입비용, 임 차료, 인건비)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
기장세액 공 제	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(산출세액의 10%)	해당 없음
무기장 가산세	해당 없음	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자는 무기장가산세부과(산출세액의 10%) ※ 복식부기의무지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% 부과
소득세 조 사	비용에 대한 소득세 조사	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사실 확인 ※ 종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비용을 밝힐 책임이 없었음